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8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정선·승선·검색·나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국내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광역화·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도주는 물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흥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제4조)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조업(제5조제1항)의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停船命令)(제6조의2)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법령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조치 시 거부·방해과정에서 직무집행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담보금 산정의 기준을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 ----- ----- <u>10억원</u> ----- ----

<u><신 설></u>	<u>제16조의3(벌칙) ① 제6조의2에 따</u> <u>른 정선명령 또는 제23조제1항에</u> <u>따른 조치에 대하여 거부·방해</u> <u>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직무</u> <u>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흥기</u> <u>나 그 밖의 물건으로 위해를 가</u> <u>하거나 가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u>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u> <u>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u> <u>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u> <u>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u> <u>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u> <u>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 ----- -----.
<u><신 설></u> 2. ~ 5. (생 략) <u>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u> <u>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u> <u>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u> <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① 제16조 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	1. <u>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u> <u>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u> <u>자 또는 선장(제16조의3에 해당</u> <u>하는 자는 제외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① ----- ----제16조의3, 제17조-----

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 조에서 “어획물등”이라 한다)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自國)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한다.

② (생략)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A set of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A single black dot is placed on the middle dashed line,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way across the page from the left.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양벌규정) -----

-----제16조의3, 제17조-----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금액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u>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u>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¹⁾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의무 및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제10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제4조), 어획물 등의 환적(제11조)이나 직접 양륙(揚陸)(제12조)과 같은 금지행위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제16의2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20조) 및 불법어업활동을 한 자가 소지하는 어획물 등의 몰수 또는 추징(제21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전 세계 해양 이용에 관한 포괄적 국제법으로, 제5부(Part V)는 EEZ에 대한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 협약의 제5부(제55조~제75조) 중 EEZ와 연안국의 권리·집행 조치에 관한 규정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EEZ 내 외국어업의 관리·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재 EEZ에서의 불법어업 외국어선에 대한 사법절차를 보면, 검사나 사법경찰이 정선(停船), 승선(乘船), 검색, 나포(拿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가 법령 위반자에게 담보금 결정서를 고지하여 담보금이 납부되면 즉시 선박과 선원을 반환·석방하며, 미납 시에는 선장·항해사·기관사 등을 구속·기소하고 선원은 강제출국시키고 있음²⁾.

- 담보금은 EEZ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선박이 압수물 반환이나 석방을 위해 국가에 예치하는 금전으로 형법상 일반제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별법상 강제력 확보나 집행 담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불법어업 담보금의 경우 그 성격에 대해 보석금이라는 견해³⁾와 벌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⁴⁾

- 2)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불법어업에 대한 연안국의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선박과 선원의 신병에 관한 임시적 조치로 이해하는 견해임. 한재진,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 담보금 제도 개선 연구」, 2022.12.
- 4) 본래 담보금이란 정식 재판에서의 출석 또는 벌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책정하는 담보금이 사실상 판사의 벌금형에 대한 재량권을 구속한다고 봄. 대부분 검사가 책정한 담보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벌금이 확정되고 있어, 사실상 벌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임.

박영길·정현욱·김민,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부과하는 담보금 제도 활용 사례 분석」,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2024.2.)

< 최근 연도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담보금 납부현황 >

(단위 : 척, 백만원)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담보금 징수	
		영해침범	특정금지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위반 등	납부(척수)	미납(척수)
2022	88	4	3	8	73	3,532(76)	2,300(12)
2023	113	9	3	12	89	7,970(102)	600(11)
2024	95	1	5	15	74	7,732(89)	1,400(6)
2025	96	1	4	10	81	6,572(92)	300(4)

자료: 해양수산부

□ 배타적 경제수역 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주요 벌칙을 살펴보면, 현행 외국인에 대한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허가 규정 위반 시 3억원 이하의 벌금⁵⁾에 처하도록 하고, 어업허가 등 허가에 붙이는 제한·조건 위반 또는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에 2억원 이하의 벌금⁶⁾에 처하도록 하며,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위반시 1억원 이하의 벌금⁷⁾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⁸⁾하는 등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나포		160	136	115	18	66	42	54	46
배타적 경제 수역	소 계	151	129	106	14	62	38	45	45
	무허가	19	10	10	2	22	7	7	12
	제한조건위반 등	132	119	96	12	40	31	38	33
영해침범		9	7	9	4	4	4	9	1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8.),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에 ‘무관용 원칙’ 대응」 -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6척 나포 등 합동 성과

《 불법조업 외국어선 합동 단속 개요 》

기간	동원세력		
	계	해양경찰	해수부
2025. 12. 2.(화) ~ 7.(일)	함선 30척 항공기 3대	대형함 4척, 항공기 2대, 특공대 4명, 특수진압대 8명	국가어업지도선 2척

《 합동 단속 기간(2025. 12. 2.~7.) 중 주요 활동 성과 》

구 분	총 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나 포	6척	1척	5척
담보금	2.4억	0.4억	2억
검문 검색(경교장)	241척(10)	106척(6)	135척(4)
퇴거·차단	13척	4척	9척

자료	해양경찰청 (출처 : e-나라지표)
주석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조직화·광역화·폭력화되고 있으며, 불법 어업활동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선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흥기 등으로 피해를 가하거나 저항하는 등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 허가 규정 위반 시 벌금(3억원 이하)과 정선명령 위반 시 벌금(1억원 이하)의 한도액을 각각 10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하여 불법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고, 직무집행공무원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 또한, 위와 같이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할 경우 안 제23조제5항에 따라 담보금 산정기준도 벌금액에 맞춰 상향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담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6조의2(무허가조업 등 벌금 3억원→10억원 상향) 및 제17조

(정선명령 위반 벌금 1억원→2억원 상향)와 관련하여 외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주변국 등 해외 국가의 벌금형 기준과 벌금형 상향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해외 국가의 벌금형을 살펴보면, 무허가·금지해역조업의 벌금 상한액은 우리의 경우 3억원, 중국의 경우 40만위안(8,500만원), 일본의 경우 3,000만엔 이하(2억 9,000만원)으로 주변국(한·중·일)의 경우 벌금 상한액이 3억원 이하인 반면,

< 주변국(한·중·일) 자국 EEZ 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기준 >

위반유형		한국	중국	일본
무허가조업, 금지해역조업		3억원 이하	40만위안 이하 (8,500만원)	3,000만엔 이하 (2억 9천만원)
어업활동정지 명령 위반		2억원 이하	40만위안 이하 (8,500만원)	1,000만엔 이하 (9,800만원)
어획물 전적		2억원 이하	40만위안 이하 (8,500만원)	1,000만엔 이하 (9,800만원)
허가 조건 위반	조업수역·기간·어구·어법	2억원 이하	30만위안 이하 (6,300만원)	1,000만엔 이하 (9,800만원)
	망목규제·이중그물사용	"	5만위안 이하 (1,000만원)	"
	조업일지 부실기재	"	"	"
	승선원명부	"	-	"
정선명령 불응		1억원 이하	-	300만엔 이하 (2,930만원)

자료 : 해양수산부

미국⁹⁾의 경우 민사 행정벌금(최대 2억 7,105만원)과 형사처벌

9) 미국의 관련 민사 행정벌금은 위반행위 당 누적 시스템으로, 보통 무허가어선의 경우 정선명령 불응, 승선조사 방해, 서류 조작 등이 모두 해당되어 약 100~150만달러 부과 사례 多 (해양수산부)

(최대 2억 8,618만원)으로 이를 병과할 수 있고, EU의 경우 EU 차원의 공동 수산정책 및 “IUU 어업 규정”에 따라 불법어획물 가치의 5~8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호주¹⁰⁾의 경우 무허가 조업 기준 최대 7,500 벌금단위(penalty units)인 21억 7,214만원 부과가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및 200억 루피아(약 17억원)의 벌금을, 태국의 경우 최대 3,000 만바트(약 1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정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참고자료 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경제적 징벌 효과를 위해 안 제16조의2(무허가조업 등 벌금 3억원→10억원 상향)에 대해서는 벌금형 상한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17조제1호(정선명령 위반 벌금 1억원→2억원 상향)에 대해 상한을 3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행법 제1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¹¹⁾(어업허가 등에

10) 호주의 자국 EEZ 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기준

무허가 등 중대위반	최고 벌금액	환산
선박 길이 24m 이상	7,500 벌금단위(3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AUD \$ 2,347,500 (21억 7,214만원)
선박 길이 24m 미만	5,000 벌금단위(2년 이하 징역 병과 가능)	AUD \$ 1,565,000 (14억 4,808만원)

* 벌금단위는 호주의 벌금 계산 표준금액으로서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업데이트를 하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다름(‘23년 업데이트하여 1벌금단위=AUD 313)

1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붙이는 제한·조건 위반 또는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 벌금 2 억원)에 대해서는 그 상한을 6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수 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벌금형 상한의 상향에 대해 국제협약의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6조 및 제73조¹²⁾에 따라 연안국은 EEZ 내에서 어업자원의 보존·관리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1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5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2. 이 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연안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

제73조 연안국법령의 시행

1.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은 적절한 보석금이나 그 밖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된다.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처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외국선박을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 그 연안국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취하여진 조치와 그 후에 부과된 처벌에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한다.

예치한 뒤에는 즉시 석방되도록 하고, 어업법령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처벌에는 관련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체형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액의 상·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벌금형 상한을 상향할 경우 담보금의 상한도 같이 상향하게 되는데, 담보금 부과액이 많아질수록 벌금형 또는 노역장 유치¹³⁾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¹⁴⁾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 및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른 벌금형 상향이 실제 형벌 및 담보금 집행에서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6조의3제1항은 정선명령 또는 위반 선박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흉기나 그 밖의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13)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4) 지난 11년 동안 담보금 납부율이 평균 73.6%로 비교적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담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선주가 증가된 담보금이 부담스러워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노역장 유치로 벌금 납부를 대체하려고 하거나, 서해 NLL 부근에서 중국의 무허가 목선 또는 소형 어선이 많이 나포되었는데 이 선박들의 선체 가격이 낮아서 담보금 납부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1척당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와 미납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납부한 경우 평균 81.8백만원인 반면 미납의 경우 274.3백만원으로 벌금 상한액인 3억원에 육박한다. 즉, 담보금이 높게 책정되면 위반자는 납부하는 대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받기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영길·정현욱·김민,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부과하는 담보금 제도 활용 사례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2024.2.)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 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징역형을 신설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6조의3제1항은 형법상 특수공무방해¹⁵⁾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징역형의 처벌수준(3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특수공무방해의 법정형(7년 6개월 이하 징역-5년 이하 징역에 2분의 1까지 가중)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해양경찰청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의 경우 형법

15)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제2항의 벌칙수준과 동일하다는 점¹⁶⁾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 안 제16조에 대해 외교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관련 법령에 징역형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의 징역형 처벌 수준이 형법 법정형에 비해 낮으며, 같은 범죄행위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어 형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16) 최근 3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3건으로 구속 9명,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가 있음(해양경찰청 자료)

< 최근 3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어선 나포 현황 >

연번	나포 일자	위반내용	구속	결과
1	'22.04.19.	무허가, 정선명령, 특수공무집행방해	1명	징역 4년, 벌금 4천만 등
2	'23.03.27.	무허가, 정선명령, 특수공무집행방해	1명	징역 1년, 벌금 3억 등
3	'24.01.29.(2척)	정선명령,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 주선 선장 : 징역 26년, 벌금 1억 ▪ 종선 선장 : 징역 16년, 벌금 1억 ▪ 기타 선원 : 집행유예 처분 등

자료 : 해양경찰청

17) 영해까지는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제2조)이 적용되나,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형법 제5조 외의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제6조).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지, 범죄자 국적을 묻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라 한다.

배종대, 「형법총론」(홍문사, 2024.09.), p.86

[관련규정]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안 제23조제5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담보금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벌금액을 원칙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이 담보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¹⁸⁾에 따라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인데, 담보금이 실제로 벌금액에 연동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액 상한을 상향하여 수정의결함.

1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강력한 경제적 징벌효과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직무집행공무원 위해 행위 등에 관한 벌칙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2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안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안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3, 제17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7조”로 한다.

안 제22조 본문 중 “제16조의3, 제17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7조의2”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 ----- ----- ----- <u>10억원</u> ----- -----.	제16조의2(벌칙) ---- ----- ----- ----- <u>15억원</u> ----- -----.
<u><신 설></u>	제16조의3(벌칙) ① <u>제6조의2에 따른</u> <u>정선명령 또는 제2</u> <u>3조제1항에 따른</u> <u>조치에 대하여 거</u> <u>부·방해하거나 기</u> <u>피하는 과정에서</u> <u>직무를 집행하는</u> <u>공무원 등에게 흉</u> <u>기나 그 밖의 물건</u> <u>으로 위해를 가하</u> <u>거나 가하려는 행</u> <u>위를 한 자는 3년</u> <u>이하의 징역 또는</u> <u>3억원 이하의 벌금</u> <u>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죄를	<u><삭 제></u>

	<u>범하여 공무원 등</u> <u>을 상해에 이르게</u> <u>한 때에는 3년 이</u> <u>상의 유기징역에</u> <u>처한다. 사망에 이</u> <u>르게 한 때에는 무</u> <u>기 또는 5년 이상</u> <u>의 징역에 처한다.</u>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17조(벌칙) ----- ----- ----- <u>6억원</u> ----- ----- -.
<u><신 설></u>	1. 제6조의2를 위반 <u>하여 정선명령을</u> <u>따르지 아니한</u> <u>선박의 소유자</u> <u>또는 선장(제16조</u> <u>의3에 해당하는</u> <u>자는 제외한다)</u>	<u><삭 제></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 음)	2. ~ 5.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 <u>조의2를 위반하여</u> <u>정선명령을 따르지</u> <u>아니한 선박의 소</u>	<u><삭 제></u>	제17조의2(벌칙) 제6 <u>조의2를 위반하여</u> <u>정선명령을 따르지</u> <u>아니한 선박의 소</u>

[illegible]

용인, 그 밖의 종업원	-----	
이 그 법인 또는 개	-----	
인의 업무 또는 재산	-----	
에 관하여 제16조의2,	-----	
제17조, 제17조의2 또	---제16조의3, 제17조	
는 제18조부터 제20	-----	
조까지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위반행	-----	
위를 하면 그 행위자	-----	
를 벌하는 외에 그	-----	
법인 또는 개인에게	-----	
도 해당 조문의 벌금	-----	
형을 과(科)한다. 다	-----.	
만, 법인 또는 개인이	-----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	
기 위하여 해당 업무	-----	
에 관하여 상당한 주	-----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	
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제 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 ----- ----- <u>15억원</u> -----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2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제17조(벌칙) ----- ----- <u>6억원</u>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u>1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 ----- ----- <u>3억원</u> -----.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u> ----- ----- -----.